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2D INFANTRY DIVISION  
ROK/US COMBINED DIVISION  
BLDG 6500, UNIT #15236  
APO AP 96271-5041

EAID-CG

2021년 6월 3일

수신: 하기 배부처 참조

제목: 지휘 지침서 #2: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예방 (SHARP) 프로그램

1. 본 지침서는 모든 전의 SHARP 수칙 관련 지침을 상회함. 이는 폐지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유효함.

2. 참고 자료:

- a. 국방 수권 법안 (NDAA) 회계연도 (FY) 2012, PL 112-81, 2011년 12월 31일.
- b. 국방부 지령 6495.01, 성폭행 예방 및 대응 (SAPR) 프로그램, 2012년 1월 23일 (변경사항 3 적용, 2017년 4월 11일 부).
- c. 국방부 지시 (DoDI) 6495.02, 성폭행 예방 및 대응 (SAPR) 프로그램 절차, 2013년 3월 28일 (변경사항 4 적용, 2020년 9월 11일 부).
- d. 국방부 지시 (DoDI) 6495.03, 국방부 성폭행피해자 지지자 검증 프로그램 (D-SAACP), 2020년 2월 28일.
- e. 미국방부차관실 지침, 제목: 성폭행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관련 신속 전출 정책 수정 사항, 2020년 2월 10일.
- f. 육군규정 600-20, 육군 지휘 지침서, 2020년 7월 24일.
- g. 육군규정 690-600, 평등 고용 기회 차별 민원, 2004년 2월 9일.
- h. 육군 명령 (AD) 2018-16, 제목: 특정 군 보직 선발 및 평가 기준, 2018년 11월 8일.

EAID-CG

SUBJECT: Command Policy Letter #2: Sexual Harassment/Assault Response and Prevention (SHARP) Program

- i. 미육군본부 행정명령 221-12, 2012 성폭행/성희롱 대응 및 예방 (SHARP) 프로그램 동기화 명령, 2012년 6월 23일.
- j. ALARACT 344/2013, 미육군본부 행정명령 052-14, 성폭행 관련 SHARP/SARC 담당관 및 VA 연결 가능 연락처 명시된 미육군 기지 및 그 외 포함 시설 웹사이트 정보, 2013년 12월 31일.
- k. ALARACT 188/2014, 미육군본부 행정명령 193-14, SHARP 프로그램 인원 및 그 외 식별된 중요 신뢰 보직 심사위원, 2014년 7월 25일.
- l. 미육군본부 행정명령 204-16, 성폭행 성추행 관련 준비태세 노력, 2016년 6월 14일.
- m. 주한미군(USFK) 규정(Reg) 600-20, 성폭행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2015년 7월 16일.
- n. 주한미군 규정 690-1, 규정 및 절차 – 한국인 직원, 2017년 7월 1일.
- o. 주한미군 지휘 지침서 #9, 성폭행 예방 및 대응 (SAPR), 2014년 1월 2일.
- p. 미 8군 지휘 지침서 #8, 성폭행/성희롱 예방 및 대응 (SHARP) 프로그램, 2020년 10월 3일.
- q. 육군 규정 27-10, 군사재판, 2020년 12월 30일.
- r. 미국방부차관 최신 서신 SAPR 관련 신속 전출 정책 부양자 포함, 2020년 2월 10일.
- s. ALARACT 013/2021, 제목: 추가 SHARP 프로그램 지침: 신속 전출, 24개월 안정화, 그리고 보상, 2021년 2월 22일.
- t. 미육군본부 행정명령 105-21, 제목: 고위급 지휘관 및 SHARP 전문관 대상 성폭행/성희롱 예방 및 대응 (SHARP) 신속 전출 교육, 2021년 2월 23일 미국방부차관

서신, 제목: 성폭행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관련 신속 전출 정책 수정 사항, 2020년 2월 10일.

3. 목적. 미 2사단/연합사단 (2ID/RUCD) SHARP 프로그램은 미국방부와 미육군의 성희롱 및 성폭행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구현함. 미육군/2사단은 성희롱, 성폭행, 혹은 관련된 보복 행위를 용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음. SHARP 프로그램은 성희롱 및 성폭행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문화를 함양함으로써 육군 준비태세를 향상하고 관련 예방, 교육 및 훈련, 대응 역량, 피해자/생존자 지원, 보고 절차, 온당한 책임감을 구현함으로써 소속 구성원 (장병, 군무원, 군인가족)의 안전, 복지, 준비태세를 향상하는 것임. 미 2사단은 휘하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전념을 다할 것임. 본 정책은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생존자가 보복, 응징, 그리고 협박의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이런 보고 체계를 장려하는 지휘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성희롱과 성폭력은 미육군 가치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임. SHARP 프로그램은 성희롱 및 성폭행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문화를 함양함으로써 미 2사단/연합사단의 준비태세를 향상하고 관련 예방, 교육 및 훈련, 대응 역량, 피해자/생존자 지원, 보고 절차, 온당한 책임감을 구현함으로써 소속 구성원 (장병, 군무원, 군인가족)의 안전, 복지, 준비태세를 향상하는 것임.

4. 배경.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행위는 장병, 군무원, 가족 구성원, 그리고 리더와 조직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임. 구성원들간의 신뢰는 훼손될 수도 또는 되어서도 안되는 신성한 가치임.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은 미육군 지역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이는 극히 기능적인 조직에 필수적인 신뢰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대한민국에서의 '파이트 투나잇' 임무를 위한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 미2사단/연합사단은 성희롱, 성폭행, 혹은 관련된 보복 행위를 용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음. 사단 지휘계통에 속한 모든 제대는 이러한 행위를 부대의 준비태세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여 각 제대별로 역량껏 이런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5. 논의.

a. 성희롱 및 성폭행은 미육군 가치와 전사 정신에 양립할 수 없는 행위임. 성희롱과 성폭행은 우리 군인과 군무원 직원의 사기, 안전, 동기부여, 성과, 단결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대의 준비태세도 해당됨. 결과적으로 장병의 잦은 결석, 비효율성, 그리고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임. 성희롱 및 성폭행은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불법행위임. 성희롱 및 성폭행은 본 사단 내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 성희롱 및 성폭행 피해자/생존자는 항시 엄중하고 공정한 처사로 대하여 존중할 것임.

b. 성희롱은 성차별의 유형 중 하나임. 이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 부탁 및 요청, 성적본성이 담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적 언행 혹은 행동을 포함하며 이러한 행동들이 관련 인원의 직업, 급여, 직장, 고용 결정과 연관되고; 타개인의 업무 성과에 관해 비합리적인 참견 및 방해가 되며;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할 경우를 포함함.

(1) 군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협박, 보복, 응징 혹은 추가 희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SHARP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부에 성희롱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2) 성희롱 신고 옵션은 익명, 비공식, 그리고 공식 신고로 이루어져 있음:

(a) 익명 신고는 성희롱 신고 옵션 중 하나로서 접수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무명 혹은 미식별 출처를 통하거나 험프리스기지사령부 성폭행 핫라인 0503-363-5700, 0503-357-8912를 통하여 신고가능 함. 또는 미국번 011-82-503-363-5700 혹은 범세계 연중무휴 011-82-503-357-8912으로 익명, 비밀 안전 라인으로 특화되고 비화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항시 관련 정보와 도움 및 지원 제공가능 함. 더 자세한 정보는 **safehelpline.org**. 에서 확인 가능함. 개인정보 누설 예방을 위해 개인적 신고 및 민원은 요구되지 않음. 지휘관은 연중무휴 주한미군 SHARP핫라인의 익명 신고 기능을 소속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공지할 것임. 의혹은 있지만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인원들조차 해당 소속 부대장(여단급)에게 연락 조치가 이루어져 평가를 받게 될 것임. 군인, 군무원, 그리고 가족들 중 18세 이상 성인에 경우 사단/여단 SHARP사무실 DSN: (315) 756-7134로 연락하여 신고 접수할 수 있음. 사단 SHARP 핫라인 번호는 010- 8685-7285 연락가능하며 혹은 모든 국내 DSN선을 통해 158로 다이얼을 걸거나 상용선 0503-363-5700으로 전화하면 주한미군

SHARP 핫라인을 통해 신고 접수 가능함. 군인과 군무원은 보복 및 응징 행위 혹은 위협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음. 이는 사단 SHARP 사무실 DSN 756-7133/7134/7135, 사단 감찰실 DSN: (315) 756-7351, 미국방부 감찰실 핫라인 DSN 312-664-8779, 상용선 1-800-424- 9098을 포함함.

(b) 비공식적 신고 옵션은 피해자가 민원 기록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경우를 해당함. 비공식적 신고는 신고인이 직접 혹은 성폭력대응협조관(SARCs), 피해자 변호사 (VAs), 지휘관, 혹은 그 외 피해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상관과 같은 다른 부대원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음. 비공식적 성희롱 민원을 접수하고 논의하는 SARC는 기록부에 민원내용과 해결 조치에 대해 기록하며 관리 유지함. SARC는 성희롱 민원이 피해자 혹은 다른 타인의 의해 지휘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지휘관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민원제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함.

*(b) 공식적 민원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맹세하고 이를 기록에 남기는 절차를 일컫는다. 공식적 민원은 세부적인 조치를 동반한다, 타임라인을 명시하고, 조치에 대한 서류 작업 또한 요구한다. 개인이 DA Form 7746(성희롱 민원)을 활용하여 여단 SARC에게 도움받아 작성한다. 모든 장병은 사건 발생일 기준 60일 이내로 공식적 민원 절차를 밟는 것을 장려한다. 이는 수사와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책임 여단 지휘관은 GCMCA에 72시간 내로 모든 공식적 성희롱 민원을 보고해야 한다.*

(3) 미군무원 직원은 육군규정 690-600에 의거 EEO사무실을 통해 성희롱 민원을 보고 한다. 이들은 해당 주둔기지 EEO사무실 직원을 통해 연락을 할 수 있음: Area I DSN: (315) 722-1027 혹은 상용선 0503-322-1027, Area II DSN: (315) 722-5010 혹은 상용선 0503-322-5010, 그리고 Area III DSN: (315) 755-9155 혹은 상용선 0503-355-9155.

(4) 한국인 군무원 직원은 주한미군 규정 690-1, 13장 5절 민원절차 항목에 의거 소속부대의 직속상관 혹은 지도부에 성희롱 민원 제출 혹은 보고를 함.

- c. 성폭행은 범죄임. 성폭력은 무력사용, 무력위협, 권한 남용 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권이 없는 경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의도적인 성적 접촉으로 정의되는 범죄임. 성폭행은 군사법적에서 명시하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성적 폭행 범주에 포함됨: 강간, 성폭행, 악질적 성적 접촉, 학대적 성적 접촉, 혹은 이를 시도하려는 모든 행위. 성폭행 신고에는 두가지 보고 옵션이 있음: 제한적 신고 및 비제한적 신고. 성폭행은 미육군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군사법전과 그 외 연방 및 지역 민간 법규 아래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

(1) DHA와 협조 하에, MTF 지휘관들에게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는 MTF 내에서 신변보장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폭행 피해 보고를 한 장병, 성인 혹은 18세 이상 군인가족 구성원, 그리고 미군무원을 위한 절차에 관한 것임. 성폭행 피해자/생존자는 두가지 신고 옵션이 있음: 제한적 그리고 비제한적 신고.

(a) 제한적 신고 방법은 조사를 동반하지 않음. SC는 성폭행 사고에 대해 통보를 받지만 피해자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제공 받지 않음. 제한적 신고는 장병과 성인 혹은 18세 이상 군인가족 구성원이 만약 성폭행 피해자/생존자일 경우 사건의 관한 정보가 특정 관련 개인들(SARC, SHARP VA, 피해자 대표(VR), 또는 의료 제공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SARC와 SHARP VA의 의료 진료와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옵션임. 성폭행 피해자/생존자는 직접적으로 SARC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SARC는 SHARP VA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피해자/생존자에게 의료 진료와 성폭행 법의학 조사 (SAFE)를 제공하며, DD Form 2910을 통한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됨. 제한적 신고 옵션은 오직 장병과 성인 및 18세 이상 군인가족만 선택할 수 있음. 미군무원은 만약 제한적 신고를 택하길 원할 경우 SARC, SHAP VA,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여야 함. 만약 피해자/생존자가 제한적 신고 옵션을 선택할 경우, 향후 비제한적 신고 체계로 변경 또한 가능함. 변경은 기록될 것이며 피해자/생존자의 서명과 SARC 혹은 SHAPR VA의 서명이 이에 해당하는 DD Form 2910에 칸에 기입되어 있어야 함.

(b) 비제한적 신고 방식은 조사를 동반하며 지휘계통을 통해 통보가 가고 신고자는 SARC 및 SHARP VA 를 제공받고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성폭행 사건이

비제한적 신고를 통해 접수되면, SARC 에게 통보되고 SHARP VA 를 통해 혹은 지시하여 대응하도록 하며 피해자/생존자에게 긴급 의료와 선택적인 법의학 조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DD Form 2910 을 설명함으로써 제한적 혹은 비제한적 신고 방식에 대한 선택이 있음을 알릴 것임. 만약 피해자/생존자가 비제한적 신고 방식을 택할 경우, USACIDC 로 접수가 되는 즉시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음. 만약 비제한적 신고 방식을 택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와 담당 연락처를 명시한 DD Form 2701 (피해자 및 범죄 증인 초기 정보)을 작성 완료한 후, 미국방부 법집행 기관에 피해자/생존자 비제한적 신고 건으로 배포될 것임.

- (c) *비참여 피해자/생존자*: 비참여 피해자. 피해자에게는 비제한적 혹은 제한적 신고 선택에 상관없이, 아래 가이드라인이 적용 될 것 임: (1) 성폭행 관련 세부내용은 공식적으로 알필요가 있는 인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것임. 피해자의 결정에 따라 조사 혹은 기소에 참여를 거절하는 경우 성폭행 사건 관련 인원 전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존중할 것이며 이는 관련 사건 조사 혹은 기소 담당관을 비롯해 지휘관, USACIDC 인원, 그리고 피해자의 지휘계통 인원들 모두를 포함함. 피해자가 기존의 비제한적 신고 방식을 택하였음에도 조사 혹은 기소 과정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아래 호에 의거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피해자는 비제한적 신고 방식에서 제한적 신고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음. 피해자는 SARC, SHARP VA 혹은 VR를 통해 조사 및 기소과정은 피해자의 참석여부에 상관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것을 통보받을 것임. SARC, SHARP VA, 그리고 VR 서비스, 의료, 심리 치료 혹은 SVC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은 피해자의 참석여부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음. 위에 나열된 서비스는 육군 내 모든 성폭행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임. 만약 피해자가 SARC, SHARP VA, VR, 혹은 의료 지원 제공자와 접촉하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한 후 마음을 바꿔 DD Form 2910 서명을 하지 않아도, SHARP 전문관 혹은 의료 제공자는 조사관 혹은 지휘관에게 이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 대화 내용 또한 공개할 의무가 없음. 만약 지휘관 혹은 법집행부 관련 인원이 보고에 대해 의문할 경우, MRE 514 특권 예외 조항에 의거한 적용 범위까지만 공개될 것임.

- (d) **독자적 조사:** 독자적 조사는 피해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님. 지휘관에게 성폭행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출처로 접수한 경우 (피해자가 제한적 신고를 했거나 피해자에 관련한 보고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지휘관은 즉각적으로 군범죄조사조직 (MCIO)에 보고할 것이며 이 후 공식적 (독자적) 조사가 독자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될 것임.

만약 진행 중인 독자적 조사가 있는 경우, 성폭행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더이상 제한적 신고 옵션을 택할 수 없음 – 미국방부 법집행부서가 SARC에 조사 착수에 관해 통보할 때 피해자가 아직 제한적 신고 옵션을 택하기 전인 경우. 제한적 신고 관련 접수 타이밍을 매우 중요함.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피해자는 SARC가 진행 중인 독자적 조사에 대해 통보받기 전에 DD Form 2910에 서명하여야 함. 만약 SARC가 독자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할 시점에 DD Form 2910에 피해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SARC는 피해자에게 더이상 제한적 신고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해야 함. 그러나, 모든 피해자와 SHARP 전문가와의 대화 내용은 기존대로 기밀 유지됨. 만약 피해자가 제한적 신고를 정식으로 신청한 후에 독자적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독자적 조사는 피해자의 제한적 선택에 그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음. 만약 군복무 혹은 장애여부 결정때문에 지휘관이 제한적 성폭행 신고에 관한 정보를 접할 경우, 해당 지휘관은 USACIDC에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것이며 제한적 선택에 대한 혜택은 지속될 것임.

- (2) 성폭행 피해자/생존자가 의료원에게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즉각적으로 SARC에게 연락을 취할 것임. SARC/VA는 두가지 신고 옵션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이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자료, 신속 전속, 피해자 특별 상담을 포함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DD Form 2910, 피해자/생존자 선호 보고 방식 증명서를 완료할 것임. 군종목사나 피해자 특별 상담관은 공식적인 신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음. 군종과 상담관에게 보고한 내용은 피해자와 면담할 수 있는 특혜에 따른 이유로 SHARP서비스를 위해 제출되거나 조사를 착수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서는 안됨.



- (3) 모든 성폭행 피해자/생존자는 특별 피해자 상담관 (SVC)와 SHARP 전문관 (SARCs 그리고 VAs)과 상담할 권리가 있음. SHARP 전문관과의 대화내용은 비밀이며 MRE 514조항에 의거 보호됨.
  - (4) 가정 외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생존자 장병 그리고 성인 군인가족 구성원은 신속 전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 (5) 신고 방식에 구분 없이 피해자/생존자는 항상 공평하게, 존엄과 존중으로 대할 것임. 이들 개인의 사생활 존중과 보호 그리고 2차 피해 혹은 다른 부당함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관건임.
- d. 지휘관, 관리자, 그리고 지도자는 지위에 상관없이 안전한 환경을 자기 부대 소속 피해자를 위해 제공할 책임이 있음. 지도자는 위치에 상관없이 임기 간 소속 근무실 공간, 숙소, 취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행 성희롱 위험을 근절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모든 지휘관은 AR 600-20에 의거 출저를 불문하고 사고에 대해 접수 시 즉각적으로 SARC와 USACIDC에 통보하고 이는 제 3자도 포함한다. 지휘관은 진위여부를 따지기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내부적 조사나 질의를 시행하지 않으며 USACIDC에게 하는 즉각적인 통보를 지연하지 않는다. 취임 후 30일 이내로 SARC와 일대일 대면하여 SHARP보고를 받는다. 이는 부대 최신동향, 책임구간, 비밀유지, 그리고 비제한적 및 제한적 신고의 "공식적 알권리" 요구사항, 그리고 SAIRO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한다.
- e. 우리의 리더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소속 장병들에 대해 지속 관리하며 성폭행 그리고 성희롱 사건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미2사단 지도자들은 소속 장병들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이러한 노력은 각자의 위치에서 근면과 인내를 수반하며 타인을 대상화하는 부적절한 내용 혹은 관계가 포함된 언행, 농담, 물건과 같이 초기 예후를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임. 조기 대응을 함으로서 지휘부가 각 개개인 소속원들을 존중한다는 것과 이성 혹은 동성 타인을 대상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f. 지도자는 각자의 소속 부하들에게 성폭행 성희롱 근절을 위한 지휘 철칙에 대해 설명해야 함. 예방에 실패한 경우, 지휘관과 지도자는 피해자/생존자가 즉각적이고, 전문적이며 관련분야에 능통한 인정 깊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함. 지휘관, 관리자, 그리고 지도자는 SHARP프로그램에 대해 익숙해야하며, 관련 규정 및 정책 그리고 SHARP 전문관 (SARCs 와 VAs) 같은 초기 대응자의 의무와 책임, 성폭행 법의학 조사관, 법집행처, 의료진, 미육군 피해자 증인 (연락관) 지원 프로그램 (VWAP, AR 27-10, 18장 참조)
  
- g. USFK SHARP Hotline (DSN: 158 또는 763-5700 혹은 상용선: 0503-5700) 는 24시간 주7일 운영됨. 성희롱 신고자, 성폭행 피해자/생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임. 자동화 문구는 요청자가 누른 번호를 통해 소속 지역의 대기 SHARP전문관을 연결해 줄 것임.
  
- h. **군 내부 고발자 보호 법** 미육군성 소속 구성원은 장병이 합법적으로 입법기관 의원이나 감찰관과 접촉하여 대화내용을 보호받거나 이를 받으려하는 준비를 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의도를 보임에 대하여 그 어떠한 보복 행위도 가할 수 없음 (10 USC 1034 그리고 DoDD 7050.06 참조) . 5-12절 조항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UCMJ, 92항 아래 처벌 받을 수 있음. 그 누구도 미군 구성원이 입법기관 의원이나 감찰관과 합법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그 누구도 상기 보호 받으려는 행위에 대해 불리한 인사 조치를 내리거나, 유리한 인사 조치를 위해 보류하거나 협박할 권한, 혹은 구성원에 대한 보복행위에 기반한 행위를 가할 수 없음. 보호된 대화내용은 다음을 포함함: 입법기관 의원이나 감찰관과의 모든 합법적 대화. 입법기관 의원이나 감찰관, 아래 해당 인원 혹은 조직과 나뉜 5-12b(4)조항에 명시된 내용: 미국방부 감사 구성원, 감찰, 조사, 법집행조직, 지휘관계에 있는 구성원 혹은 조직, 군법 소송 절차, 규정에 의거 지명된 인원 혹은 조직, 그 외 행정적 절차를 위한 대화 내용, 증언 혹은 그 외 대화 내용 보호 관련 서류화, 서류화를 위한 사유, 군내부고발자 보복 금지법 아래 해당하는 모든 혹은 참여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장병 혹은 군무원직원은 SARC, 미2사단/연합사단 SHARP프로그램 담당자와 감찰관에게 (315) 756-7135로 그리고 DSN: (315) 756-7351 혹은 미국방부 감찰실Hotline

번호 DSN 312-664-8779, 상용선 1-800-424-9098로 그 어떤 보복행위에 관해 신고할 수 있음.

i. 보복. 어느 장병도 피해자, 추측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 목격 후 신고했거나 신고하려는 타장병에게 그 어떠한 보복행위 혹은 신고를 막으려는 노력을 가할 수 없음. 5-13절 조항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UCMJ 아래 처벌 받을 수 있음. 정의: 미국방부 세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13조항 '보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UCMJ 아래 속한 모든 인원, 즉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이용해 보류 및 협박함으로써 유리한 인사조치를 유도하려는 모든 인원이 해당됨 (UCMJ (2019) 조항 132 참조).

j. 모든 장병은 SNS활동시 미육군 가치관과 UCMJ 기준에 적용받으며 이는 근무시간 내외 모두 포함한다. UCMJ 혹은 군인 기본 자세를 위반하는 코멘트, 포스팅, 그리고 링크공유는 금지되어 있음. 사적이고 은밀한 영상 혹은 사진물에 대한 불법 공유 혹은 방송은 UCMJ 조항 117a 아래 처벌받을 수 있음. CID는 모든 UCMJ 조항 117a를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것임.

k. 신속 전출이 승인된 경우, 피해자/생존자가 떠나기 전에 해당 지휘관 (대령급)은 전출부대 지휘관에게 원활한 인수인계를 할 것임. 본 절차는 모든 성폭행 피해자/생존자 재보직 과정에 적용됨 (예: 임기 전, 출장, 지역 외 전출 포함).

(1) 해당 지휘관 (대령급)은 전출부대 지휘관에게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전출하는 장병이 다음과 같은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모두 인수인계 한다:

(a) 진행 중인 범죄 수사.

(b) 진행 중인 법적 소송 절차.

(c) 진행 중인 피해자/생존자 성폭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필요 의료지원 (정신적 혹은 신체적).

(d) 진행 중인 SARB에 관련된 피해자/생존자인 경우

EAID-CG

SUBJECT: Command Policy Letter #2: Sexual Harassment/Assault Response and Prevention (SHARP) Program

(e) 진행 중인 SHARP 피해자/생존자 지원 서비스


(2) 핵심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심이 전출한 인원에게 보장되는 것임. 이는 2차 피해 혹은 희생을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이를 위해 공유된 피해자/생존자 치료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조사에 상황, 그리고 소송 절차에 관한 상황을 적절히 객관적인 사실 바탕으로 제한해야 함. 이를 통해 전출부대 지휘관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배경지식을 획득함으로써 필요시 피해자/생존자가 법률대리, 의료, MCIOs, 법률자문에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a) 지휘관은 최고의 자질을 갖춘 인원을 면접하고 선정함으로써 이들이 훈련받고 검증되며 NDAA FY12와 AR 600-20 소요에 의거 서면으로 상근직 그리고 부수적 임무 SARC 와 VA 담당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SHARP SARC와 VA는 임명 전 신원조회를 마치고, D-SAACP 훈련과 교육을 마쳐야 함.

(b) 모든 부대 지휘부는 성폭행 성희롱 예방과 인지 향상을 위해 매월 4월에 열리는 SAAPM 행사를 기획하고, 그 외 관련된 모든 계획, 개발, 협조, 공조, 교육 시행, 훈련, 특별 행사, 대외 행사를 진행할 것임. 장병, 군무원, 그리고 군인가족들 모두 이를 위해 동참할 것을 장려함.

6. 본 정책은 사단 내 모든 공식 게시판에 전시하고 미2사단/연합사단 구성원 내에서 유포 및 순환 될 수 있도록 함.

7. 발의. 본 지침서는 미 2 사단 SHARP 프로그램 담당관에 의해 발의됨. 담당관 연락처는 DSN 315-756-7135 또는 0503-356-7135 임.



DAVID A. LESPERANCE  
Major General, USA  
Commanding

배부처:

A